은빛사랑재가요양센터 이용규정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① 명　칭 : 은빛사랑재가요양센터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세광2차 202동 703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인정등급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 세면도움 ⑵ 구강관리 ⑶ 머리감기기 ⑷ 몸청결 ⑸ 몸단장 ⑹ 옷 갈아입히기 ⑺ 목욕도움 ⑻ 식사도움 ⑼ 체위변경 ⑽ 이동도움 ⑾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 배설도움 ⒀ 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 취사 ⑵ 청소 및 주변정돈 ⑶ 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 외출 시 동행 ⑵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 말벗 ⑵ 격려 및 위로 ⑶ 생활상담 ⑷ 의사소통 도움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의 1.5 할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

1) 월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표 1] 월 이용료 (2023.01.01. 기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6%
40% 감경대상자	9%

4.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수가한도 외의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제공가능하나, 그 외 실비는 비급여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